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3239
----------	-------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국회운영위원장

1. 제안경위

가. 국회의장이 ‘국회도서관법 개정 의견’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
(2025.7.23.)함.

나.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2025.7.29.)에서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에 회부함.

다.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2025.9.23.)에서
국회의장이 제시한 의견을 심사한 결과,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2025.9.24.)에서 국회운
영개선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은 민
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입법 활동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으
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

장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

그러나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회기록물의 수집·보관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크나, 현재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지 못하여 임기 종료 시 대부분 소실되거나 폐기되는 등 기록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회기록물의 관리 업무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이 전담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국회도서관의 직무 중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분류·정리·보존·평가·활용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제2조제1항제4호 삭제).

법률 제 호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무)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1. ~ 3. (생 략) 4. <u>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국회의원기록물을 포함한다)의 수집 · 분류 · 정리 · 보존 · 평가 · 활용</u> 5. ~ 7. (생 략) ② (생 략)	제2조(직무)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